

# 소 장

원 고 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길 OO 대표이사 O O

###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19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한 한 등록면허세 〇〇〇원 및 방위세 〇〇〇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### 1. 사실관계

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대지 ○○○m²와 위 지상 건물 1동을 소외 □□공사로부터 매입하여 19○○. ○. ○.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○○. ○. ○. 원고의 본점소재지를 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○○의 ○에서 ○○시 ○○ 구 ○○동 ○○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.

#### 2. 부과처분의 내용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청구취지와 같이 추가납부 고지하였습니다.

#### 3. 부과처분의 위법성

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가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 기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로시내로의 법인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본점전입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

또한 가사 중과세 요건이 되더라도 과세요건의 충족은 중과세 요건이 발생한 19〇〇. 〇. 〇. 본점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이때는 방위세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방위세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.

#### 4. 전심절차

- (1) 납 세 고 지 1900. 0. 0.
- (2) 감사원 심사청구 19○○. ○. ○.
- (3) 기 각 통 지 일 2000. 0. 0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 1호증 납세고지서

1. 갑 제 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부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
1. 소장부본 1부

1. 납부서 1부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 <b>***</b>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